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12. 10.(금) / 총 2매
담당 부서	민간임대정책과	담당자	·과장 이두희, 사무관 양국현, 주무관 노진원 ☎ (044) 201-4477, 4472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등록임대제도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서민의 내집 마련을 조화롭게 추구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(조선일보, '21.12. 10일) >

- ◆ 2%만 낸다는 종부세, 민간임대에 불뚝 튀었다
- 건설사·시행사 “세금 폭탄에 손해” 임대 포기하고 조기 분양

□ 작년 7.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등록이 자동말소되며, 이러한 자동말소 대상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하고 매각할 수 있습니다.

□ 그렇지만, 동일 아파트단지에서 일부 임대주택이 등록말소 후 분양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(4년) 동안 등록임대주택으로 유지되어 임차인의 거주는 계속 보장되므로 주거불안의 우려는 없습니다.

※ 등록임대주택 말소여부 및 임차인 분양여부는 개별 주택단위로 결정할 수 있고, 단지 전체를 한꺼번에 결정하지는 않음

- 아울러, 등록임대주택으로 계속 제공되는 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협의를 통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매입형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형 임대주택은 주택의 신규 공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으며, 올해 초('21.2월, '21년 경제정책방향)에는 건설형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.
- 정부는 앞으로도 등록임대제도가 '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'와 '서민의 내집 마련 지원'이라는 정책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양국현 사무관(☎ 044-201-447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